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9일 15시 05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대부허가의 취소	3

대부허가의 취소

2014.04.17 조회수 616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7
담당부서	공원과
상위법령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
규칙	여수시 자산공원일출정관리 규정 제9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11-02
규제시행/폐지일	1998-11-02
규제내용	제9조(대부허가의 취소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2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. 공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.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5.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6. 시설 보호관리가 불량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할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6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30

Yeosu Web Contents

